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산업체에 대한 저금리 융자 외 포괄적 금융지원 근거 마련〉
■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88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서 덕 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2
1. 방위산업 이차보전(저금리 융자) 사업	12
2. 방위산업 정책펀드 운용현황	14
3. 방위산업 정책펀드 운용현황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5. 4. 4.
3. 회부연월일: 2025. 4.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업체들의 방위산업 분야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재정 또는 민간자금출자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재정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방위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개발과 생산에 고액의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중소·중견기업의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방산업체등¹⁾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하거나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방위산업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 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

나. 「방위사업법」 제3조 제9호의2에 따른 일반업체

제6조(방위산업 실태조사)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방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수주·생산·매출 및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방위사업법」 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이하 “품질경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경우 그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방산업체

2. 일반업체

3.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제26조 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①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그리고 정부에게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산업체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안 제12조 제3항 신설).²⁾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자금융자) ① 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방산업체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12조(금융지원) ①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신청	② 정부는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

- 2) 유사 입법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창업기업 융자·투자 등 금융지원)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 창업기업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u>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설></u>	<u>조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산업체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³⁾에서는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 군수품 국산화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금리 융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자금융자)① 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방산업체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개정 2021. 4. 13.>

1.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교체·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3. 방산물자 및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5.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6. 연구개발 및 유희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7.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운영 및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
8. 그 밖에 방산업체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제3조4)에서는 국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과하고 있음.⁵⁾

한편,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8조6)에서는 협약을 체결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은 그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무기체계 연구개발 비용 출연, 방위산업 이차보전(장기 저금리 융자) 및 방산수출 투자지원(K-방산수출펀드) 사업을 통해 방산업체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
- 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① 국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5) 이외 제10조에서는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창업 활성화 및 경영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제13조에서는 국방연구개발, 군수품의 품질검사 등을 위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제15조에서는 방산물자의 수출지원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6)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으며,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2025년도 방산업체등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

• 방위사업 이차보전

-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방산업체, 군수품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는 일반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차보전을 수행 중에 있음
- 방위사업 이차보전: '25년 기준 약 250억원의 예산으로 신규융자 포함 약 6,000억원 규모의 융자에 대한 이차지원

• 방산수출 투자지원

-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중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K-방산수출펀드**를 운용중임
- 방산수출 투자지원('25 신규): 25년부터 연간 400+ α 억원(모펀드 200억 +자펀드 200+ α), 3년간 총 1,200억+ α 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방산 분야 초기창업기업, 직접수출기업·수출유망기업·글로벌업체공급망 진입 추진기업 등에 투자

*자료: 2025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설명자료 재구성

□ 우리나라는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범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최근 폴란드와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수출계약을 체결을 완료한 후 루마니아에 신궁, 페루에 함정, 호주에 장갑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동유럽, 중동, 미국 등 방산수출 대상국과 방산품목을 다각화 하고 있음.⁷⁾

[최근 4년간 주요 방산물자 수출계약 현황]

계약연도	수출대상국	수출품목	계약금액
2021	인도네시아	T-50	2.4억불
	필리핀	초계함	5억불
2022	필리핀	원해경비함	5.7억불
	폴란드	K2 전차(1차)	33.6억불
	폴란드	K9 자주포(1차)	24.0억불
	폴란드	천무(1차)	35.5억불
	폴란드	FA-50	30.2억불
2023	말레이시아	FA-50	9.2억불
	튀르키예	전차 부품	2.9억불
	루마니아	신궁	-
	호주	레드백 장갑차	25.0억불
	폴란드	K9 자주포(2차)	26.7억불
2024	폴란드	천무(2차)	16.4억불
	페루	함정 건조	4.7억불
	앙골라	2.75인치 유도로켓 발사대	0.1억불
	루마니아	K9자주포	10억불
	미국	지원함 정비사업	-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 재구성

- 7)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발표(2025년)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2.2%의 점유율로 10위에 해당함. 미국(43%)이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한 가운데 프랑스(9.6%)와 러시아(7.8%)가 상위 3위권을 형성했으며 이어 중국(5.9%), 독일(5.6%), 이탈리아(4.8%), 영국(3.6%), 이스라엘(3.1%), 스페인(3.0%) 등의 순서임.

이러한 방산수출 증가에 맞추어 방위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업체들의 방위산업 분야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재정 또는 민간자금출자 등을 활용한 금융 지원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음.

- 그런데, 방위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과 생산에 고액의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중소·중견기업의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현행법 12조에서는 금융지원에 대하여 ‘장기 저금리 융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중소·중견 방산업체 대상으로 다양한 신규 금융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으며, 실제 관련 예산안 편성 등 정책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함.

-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현행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현행 ‘저금리 융자’ 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포괄적인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방산업체에 대한 종합적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봄.

[재정 및 금융지원에 관한 유사 입법례]

- 「산업융합 촉진법」 제35조(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의 촉진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융합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자등에게 재정 및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물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금융지원 등) 중소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창업기업 융자·투자 등 금융지원)
 -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만,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원 대상으로 ‘방산업체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여기서 방산업체등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⁸⁾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업체’를 말하고, 일반업체는 방산업체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방산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등 방위산업에 참여 중인 기업을 말함.⁹⁾

8) 참고자료 3. 방산업체 지정 현황(84개)

9)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①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

이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업체에의 참여를 촉진¹⁰⁾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개정안 제12조제2항에서는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금융지원은 공공기관인

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 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물자

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7.>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 7.>

1. 창업 활성화 및 경영 지원
2.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3.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4.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
5. 국방중소·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6. 정보화 지원
7.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8. 국제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9.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
10. 그 밖에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연,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출연금을 교부하고, 구체적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서 방산업체등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결국 자금 출연은 방산업체등에 대한 금융지원의 일종이고, 법문언상 방산업체등에 직접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자금 출연’ 문구는 삭제하는 논의가 필요함.

- ☐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동의함.

반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법령 및 제도하에서도 국방연구개발업체 등에 출연, 저금리 융자, K-방산수출펀드를 통한 투자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가능하여 개정의 실익이 높지 않아 부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2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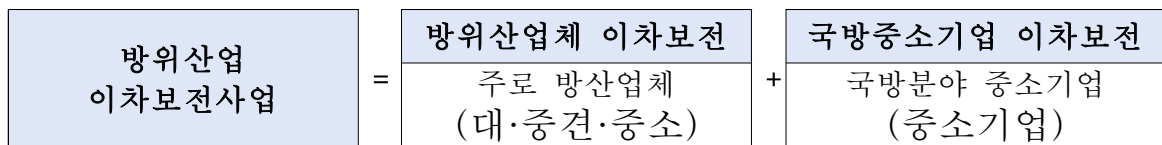
1. 방위산업 이차보전(저금리 용자) 사업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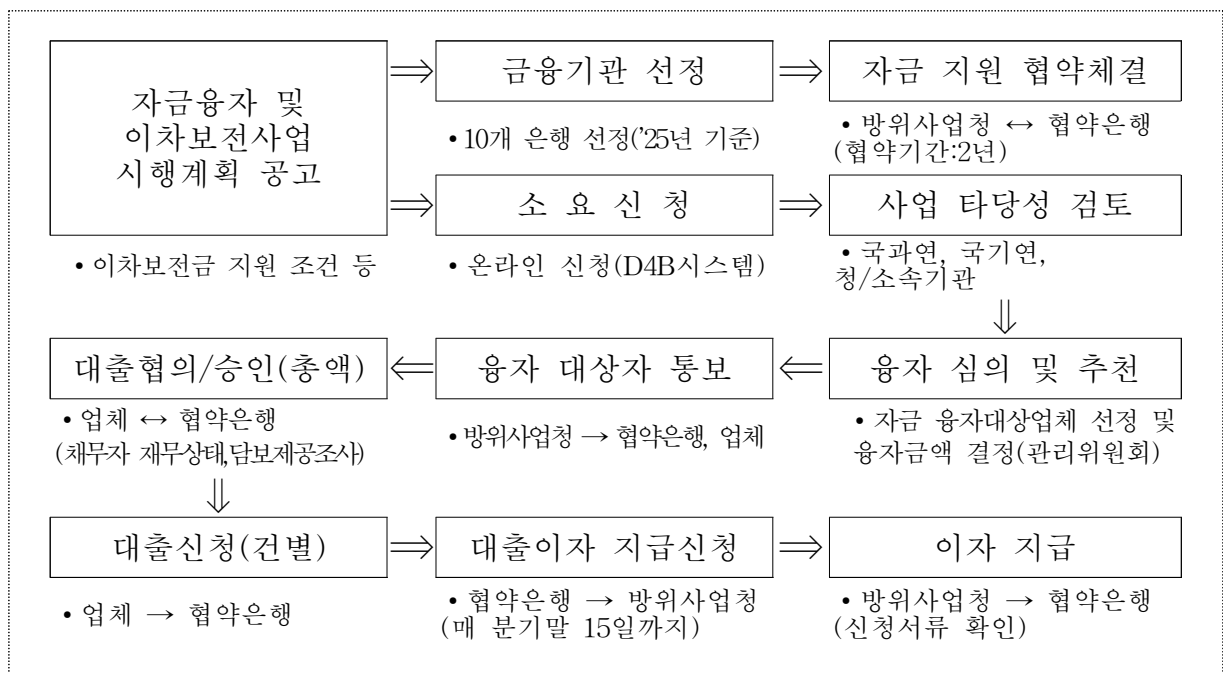
- (개요) 시중은행의 자금으로 방산업체 및 국방중소기업의 군수품생산, 연구개발, 시설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해주고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장기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 대·중견기업 1.5%p, 중소기업 3%p 지원 ** 지원분야에 따라 5년~13년

- (관련근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자금용자),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방사청 고시)
- (구분) ①방산육성자금 및 ②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구성



□ 사업 집행절차



□ 사업 추진 경과

- '07. 8.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운용요령」 지경부 공동고시
 - * '08년 이차보전사업 지원 시작
- '09. 7. 용자추천 기관 변경(지경부장관→방위사업청장)
- '14. 3. 일반업체 대상 국방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 신설
 - * 방위사업청 훈령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
- '17. 12.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정
 - * 두 개의 용자사업에 대한 공동운영규정 제정 및 지원범위 확대 등
- '23. 8.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개정
 - * 안정적인 신규용자 공급을 위한 금리체계변경(업체부담금리: 고정금리→변동금리)

□ 사업 운영 현황

- 최근 5년간 예산액 및 집행률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액	9,316	9,407	10,985	18,148	18,513
집행액	6,638	9,407	10,985	15,362	6,776
집행률	71.3	100%	100%	84.6%	36.6%

* 2025년은 6월 기준 집행현황임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신규대출 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4	2025*
방산업체이차보전	136,290	292,410	108,319	154,758
국방중소이차보전	29,448	52,900	157,314	270,585
합계	165,738	345,310	265,633	425,497

* '25년은 6월 기준 방사청의 용자추천 금액이며 타년도는 실제 대출금액임

** '23, '22년은 예산부족으로 신규대출 미시행

2. 방위산업 정책펀드 운용현황

< 방산기술혁신펀드 >

- (개념) 방산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AI·우주 등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방산진출 촉진을 위한 필요 자금을 지원('22년 신설)

* (펀드구조) 예치은행 출자금으로 조성한 모펀드가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자펀드에 투자하고, 자펀드가 기업에 투자

** (펀드규모) 총 1,300억원(모펀드 600억원 + 자펀드 700억원)

- (관련근거) 「방위산업발전법」 제3조(국가의 책무), 제10조(국방중소·벤처기업),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방사청 고시)

- 연도별 펀드 운용 계획

구분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호 자펀드	결성					운	용					청산			
2호 자펀드			결성					운	용					청산	
3호 자펀드				결성					운	용					청산

- 펀드 운용실적 및 성과

- (운용실적) 1·2호 자펀드의 본격 투자 집행 및 400억원 규모의 3호 자펀드 조성을 통해 업체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경영 안정화 도모

- 1·2호 자펀드는 각각 400억원, 500억원* 규모로 결성 후('22.12월/'24.3월) '25.7월 현재 14개 기업에 대해 328억원 투자 집행

* 2호 자펀드는 당초 결성 목표금액 보다 상회하여 결성(목표 400억/결성 500억)

- 3호 자펀드는 '25.5월 결성(400억원) 후 하반기부터 본격 운용 예정

- (투자설명회 개최) 적극적 투자유치를 통해 민간투자자의 방산 관련 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 참여 유도

- 유망한 ①방산기업 및 방산진출 희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②정책펀드 및 민간 투자자들의 방산분야 투자처 발굴기회 제공
- 투자설명회 개최('23.6월,'24.7월) 후 5개 기업에 대해 599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 * 방산기술혁신펀드 4개 기업 70억원, 민간투자 5개 기업 529억원

< K-방산수출펀드 >

- (개념)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 구축·기술개발 등 기업 운영 전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산 수출기업 전용 펀드('25년 신설)
- * (펀드구조) 재정으로 조성한 모펀드가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자펀드에 투자하고, 자펀드가 기업에 투자
- ** (펀드규모) '25~'27년간 매년 400억원(모펀드 200억원 + 자펀드 200억원), 총 1,200억원 규모 추진(정부재정 및 민간자금 매칭 등에 따라 규모 확대 가능)
- (관련근거) 「방위산업발전법」 제3조(국가의 책무), 제10조(국방중소·벤처기업),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방사청 고시)
- 연도별 펀드 운용 계획

구분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1호 자펀드	결성					운	용					청산		
2호 자펀드		결성					운	용					청산	
3호 자펀드			결성					운	용					청산

- * 3호 자펀드가 결성되는 '27년 예산 투입은 종료
- 펀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5년 예산안(200억) 국회의결 : '24.12월
 -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방사청 고시) 제정 : '25. 3월
 - 수출펀드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청-국기연) 체결 : '25. 5월
 - 수출펀드 모펀드 운용사 선정 : '25.10월

□ 관련 근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활성화 및 경영 지원
2.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3. 방산업체 지정 현황(84개)

주요방산업체(67개)	일반방산업체(17개)
기아(주), 한화오션(주), (주)대한항공, 두산에너지리티(주), (주)세아항공방산소재, 코오롱테크컴퍼지트(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화시스템(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현대로템(주), 현대위아(주), 현대트랜시스(주), 효성중공업(주), HD현대인프라코어(주), HD현대중공업(주), LS엠트론(주), SG생활안전(주), SK오션플랜트(주), (주)강남, 대양전기공업(주), 두원중공업(주), (주)모트롤, 퍼스텍(주), 평화산업(주), (주)풍산, (주)풍산FNS, 한국특수전지(주), (주)한국화이바, 한일단조공업(주), (주)한컴라이프케어,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주)HJ중공업, LIG넥스원(주), SNT모티브(주), SNT다이내믹스(주), STX엔진(주), 다산기공(주), (주)다원프릭션, 단암시스템즈(주), (주)대영에스텍, 덕산넵코어스(주), (주)테크카본, (주)동인광학, (주)비츠로밀텍, (주)빅텍, (주)삼양정밀화학, (주)삼양컴텍, 삼양화학공업(주), (주)삼정터빈(주), (주)삼주기업, (주)시공사, (주)쎈트렉아이, (주)씨앤지, (주)아이팩, (주)에이치케이씨, 연합정밀(주), (주)우경광학, (주)우리별, (주)유택, (주)이오시스템, (주)지티앤비, (주)캐스,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주)현대제이콤, SG솔루션(주), (주)삼정티비엠, (주)에비오시스템테크놀러지스	(주)진영정기, 고려화공(주), (주)동양정공, (주)광림, 신정개발특장차(주), (주)성진테크윈, (주)유아이헬리콥터, 화인정밀(주), (주)스페코, 삼영이앤씨(주), 아이쓰리시스템(주), 인소팩(주), 이화전기공업(주), (주)미래엠텍, (주)티에스텍, (주)대명, 대신금속(주)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 재구성